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인격 표지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 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행위 제재 -

최근 K-POP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5일 밝혔다.

* 제2조제1호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인격표지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번 조치는 인격 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인격 표지권 침해에 첫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 상태 즉각 해소 조치>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25.11~’26.2)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인격 표지권 침해 중단을 약속(‘25.4)하였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격 표지권 침해는 ‘부정경쟁행위’로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대상>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22.6)된 인격 표지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인격 표지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되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인격 표지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인격 표지권을 침해하여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붙임: 인격 표지권 침해상품 판매 현장 사진, 행정조사 결과 및 개요

담당 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부 정 경 쟁 조 사 팀	책임자	과 장	박위규 (042-481-8438)
		담당자	서기관	박종필 (042-481-8229)

붙임1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 판매 현장 사진



□ 사건 개요

□ 인지경로	직권	□ 피신고인	A사 등 4개 업체
□ 관련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유명인 인격표지 무단사용)		
□ 보호대상	국내 유명 아티스트(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및 그 소속 구성원)의 성명과 초상 등 퍼블리시티권		
□ 인지내용	피신고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 등이 사용된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		

□ 법 위반 여부 판단

- (영업을 위한 무단사용)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로 영업성이 인정되고, 피신고인 행위 모두 권리자 非동의
- (경쟁질서 위반 여부) 권리자의 허락없이 유통되는 상품은 권리자의 수익 창출 및 상품 판매기회 잠식 등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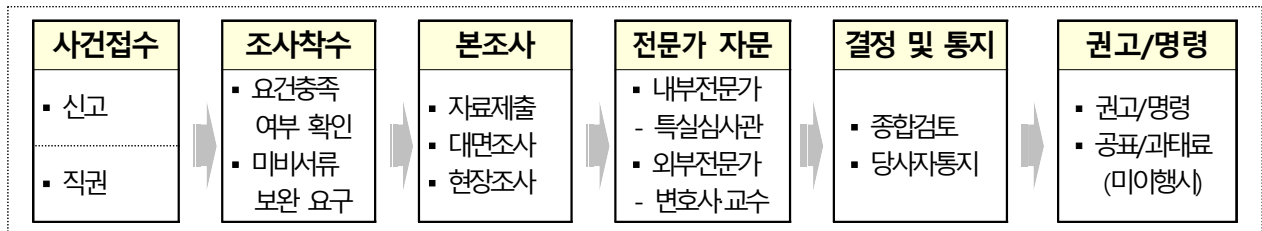
□ 조사 결과

- (위반 항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
- (조치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른 시정명령*

* 양도, 전시 등의 행위 중단 및 교육이수(4시간) 등을 명령

□ 행정조사 개요

-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 등
- **(조사 대상)** 주지표지 혼동,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및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13가지 유형
- **(구제 수단)** 행정조사(시정권고 및 명령, 공표, 과태료), 민사구제(손해 배상, 금지청구, 신용회복), 형사처벌(일부 유형*에 한함)
 - * 주지표지 혼동, 상품형태 모방 등 8가지 유형(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해당안됨)
- **(조사 절차)**



□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비율
① 주지표지혼동	1	9	24	54	59	56	55	67	69	374	35.9
② 상품품질오인	-	-	2	9	7	15	35	27	23	118	10.7
③ 상품형태모방	5	41	19	32	22	20	16	11	29	195	17.8
④ 아이디어탈취	-	29	15	18	25	22	23	14	9	155	14.1
⑤ 퍼블리시티권 침해	-	-	-	-	-	10	45	36	38	129	11.7
⑥ 기타	-	7	6	1	20	29	3	25	16	107	9.7
합 계	6	86	66	114	133	152	177	180	184	1,098	100

□ 전체 종결현황('17.12~'25)

(단위: 건)

접수	종결	처리율 (종결/ 접수)	본안(644)				본안前(326)			인용률 (인용/ 본안)
			인용(434)			기각	신고 철회	각하	기타	
			시정권고	단순인용*	시정조치					
1,098	970	88%	17	4	413	210	164	68	94	67%

*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나 종결당시 시정권고실익은 없어 시정권고는 하지 않은 사건